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11.15. 마포구청장  
나. 회부일자: 2019.11.18.  
다. 상정일자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12.6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윤민선】

## 가. 제안이유

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,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1)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3)
    -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
  - 2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」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(안 조례 제1156호 부칙 제3조)

#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#### ○ 본 개정조례안은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을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 고시 실효시점이 도래하여 보상지 이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, 공원 기능을 보전하도록 하고,

- 이에 따라,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시 실질적으로 도시공원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기존 재산세 감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4조의3(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)을 신설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·지정된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며 이는 서울시의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우리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.
- 또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 부칙 조항을 개정하여 감면 적용시한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이는 문화재, 시장정비사업,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,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### 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## [참고자료]

### 《지방세특례제한법》

**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(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 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 ( 생략 )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**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**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

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, 지상건축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③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

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 <개정 2014. 12. 31., 2018. 12. 24. >

## 《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》

제38조의2(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(植生)이 양호한 산지(山地)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14.>

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①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.